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69
----------	-----

2024. 6. 11.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5. 30. 강을석 의원 대표발의(10명 공동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4. 6. 11.)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강을석 의원)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신체적·인지적 제약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정보격차 해소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논의 필요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및 구조

가. 조례안의 개요

- 정보화 사회의 진척은 디지털 확대를 가져와 비대면의 일상화 및 온라인 중심 사회로 생활환경이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음.
- 일상생활에 제약 있는 장애인은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추어 적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바, 장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디지털 활용능력 및 접근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정보격차의 가속화가 발생하여 지역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성이 높다고 하겠음.
- 금번 조례안은 강을석 의원(공동발의 9명) 대표발의로 디지털 중심의 정보화 사회로의 급변에 있어서 장애인이 처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상의 근거 마련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나. 조례안의 구조

- 조례안은 ① 장애인과 그 보호자(이하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안 제1조)으로 하며, ② 이를 위해 구청장이 정책적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실행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지향하며(안 제3조), ③ 장애인 정책의 일환으로서 당사자주의를 감안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명시하고(안 제5조), ④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콘텐츠보급 사업 등 구체적

사업을 예시하며(안 제6조), ⑤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근거 또한 명시하고(안 제7조), ⑥ 복지사업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홍보 의무를 마련하였음.(안 제8조)

- 조례안은 조례의 취지와 목적, 자치사무로서 집행부가 조례의 목적을 실현해야 할 책무,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실태조사, 집행부의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집행 사업 예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민간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홍보 등으로 짜임새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2 주요 사항 검토

가. 지원사업(안 제6조)

조례안 제6조
<p>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콘텐츠 보급 사업 2.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3. 그 밖에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조례안은 안 제6조에서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콘텐츠 보급 사업 등을 예시하고 있는 바, 이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의 부족은 개인의 삶의 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영역인 집행부가 책임있게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써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집행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① 스마트 장애인 복지포털 ② 장애인 정보화 교실 ③ 장애인 신문 보급사업 ④ 장애인서비스 가이드북을 예로 들고 있음.

<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현황(2024년 5월말 기준)

지원사업	사업내용	해당 조례(안)
스마트 장애인복지포털	장애인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며, 챗봇과 음성합성 기술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6조 제1항
장애인 정보화 교실	장애인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디지털 정보 취득 및 이용 역량 강화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6조 제2항
장애인 신문 보급사업	장애인들에게 신문을 보급하여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여 권익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포용 촉진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6조 제3항
장애인서비스 가이드북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장애인에게 보급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6조 제3항

- 조례안이 마련될 경우 기존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예측가능성, 신뢰성 등을 위한 법적인 근거로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앱 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근거한 사용성과 편의성이 증대된 형태의 사업도 기획하는데 기여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3 결론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22년 10월 공개한 ‘디지털 시대 장애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연구’에 따르면 정보 해독력¹⁾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의 부족은 개인의 삶의 질의 저하와 더불어 사회적 및 국가적으로 경쟁력의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검토하건데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인 삶의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서도 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1) 개인에 대한 정보역량을 통칭하여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라고 부르고 있고, 이러한 정보역량은 정보화 사회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한국장애인개발원, ‘디지털 시대 장애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연구’, 2022.10, 4쪽)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사회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비장애인과 차별되지 않고 장애인 스스로 개인적인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금번 조례안의 취지는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다만 2018년 3월 행정안전부는 2017년 공공앱 운영현황을 조사한 바, 성과 측정 후 기관별 이행계획을 반영하여 공공앱 895개 중 510개는 유지, 215개는 개선, 147개는 폐기하였으며, 이는 무분별한 개발, 운영관리 미흡, 유사·중복 등의 문제에 연유한 저조한 이용률 및 낮은 실효성에 기인하였다고 함.

이를 고려하여 장애인 정보격차 사업을 기획 및 집행 단계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를 참여하여 효과성 등을 엄중히 평가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장애인 유형 중 시각장애인이 가장 정보격차가 심하였고, 지체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나는 등 장애유형별 사업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 섬세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강을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9
----------	-----

발의연월일: 2024. 5. 30.

발 의 자: 강을석·한윤수·복진경·
윤석민·황영각·전인수·
이호귀·이향숙·손민기·
김형대 의원(이상10인)

1. 제안이유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신체적·인지적 제약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정보격차 해소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논의 필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접근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콘텐츠 보급 사업
2.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3. 그 밖에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